

광산중학교 학생생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광산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임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거시)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 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 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2 -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범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가진다.
- ⑮ 학생은 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가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가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제정책 지원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폐쇄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가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리와 지지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3 -

- 4 -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재료,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즐기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5 -

전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수업 및 교육활동(조·종례 시간,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중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태블릿PC, MP3, 스마트워치, 노트북, 이어폰 등 정보통신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인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전자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⑦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 유포하지 않는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접희)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접희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접희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접희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7 -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궁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단, 교육적 활동에 관한 용도로는 허용한다.)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제14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스마트워치, 노트북, 이어폰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가

- 6 -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한다.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학교의 장과 교원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주의·훈계·훈육·보상 등의 교육적 조치

- 8 -

5. 생활교육위원회(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체 신청

제23조(주의·훈계·훈육·보상)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의·훈계·훈육·보상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 행동에 대한 시정 요구
 2. 문제 행동 시정 불응 시, 교실 밖 분리조치
 3. 문제 행동에 대한 교과교사, 혹은 담임교사의 상담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혼란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8.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로써의 주의
 9.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로써의 보상
 10.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23조의 상담, 조언 및 주의, 훈계, 훈육, 보상 등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흥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고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育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조언·주의·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育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제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외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3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상습적인 육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3	교사에 대한 불순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정부 위조, 또는 혼란	○	○	○	○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8	교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망조	○	○	○	○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10	상습적 흡연(전자담배 포함) 및 음주	○	○	○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미약류 등 복용	○	○	○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14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15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해소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16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해손 및 절도	○	○	○
1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제5장 규칙의 개정

제34조(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3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칙

제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 3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절 학생지도의 방식

제 40 조 【조언】

- 14 -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41 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로전담교사, 전문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서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종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2 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43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 15 -

- 16 -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예시]**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대상·수업방법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 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 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특별실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 시간 내 10분 이내)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 위학교 재량 결정)	
3호 지도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 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을 지속 방해할 경우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 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 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 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 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일부 부록(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 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지정한 장 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과서 요약 등 과 제 부여 ■ 수업 교사 학생에게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 동
4호 지도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 선희우원화)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 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 유를 사전에 통지함 (60분 이내)	행동성찰문 등 과 제 부여

- 17 -

장소로의 분리	경우		
기타	- 학교급(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3호, 4호 지도의 분리장소 (시간)	★ 3호, 4호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안내 성찰실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시간은 수업 종료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추가 및 수정 가능)	
요건, 분리장소(시 간), 절차 및 유의 점	■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안내 방법 1) 수업교사가 전화로 교감에게 학생 인계요청 - 분리학생 인계 교직원은 교감, 상담교사(학생 상담 중에는 배제), 해당 학년 공강교사(교장 지정) 등의 순서로 한다. - 교감 부재 시 상담교사(학생 상담 중에는 배제), 해당 학년 공강교사(교장 지정) 등의 순서로 한다. - 인계시 배움터지킴이 동행 협조 방법 2) 분리학생 지도 - 분리학생 지도 교직원은 교장, 상담교사(학생 상담 중에는 배제), 해당 학년 공강교사(교장 지정) 등의 순서로 한다. - 교장 부재 시 다음 순위자 지정(분리학생 지도는 상담교사(학생 상담 중에는 배제), 해당 학년 공강교사(교장 지정) 등 등의 순서로 한다.) - 분리 장소 : 성찰실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담당 수업 교사 학교 관리자 등 교직원 학교 관리자 등 교직원 학교 관리자	방법 - (현대) 전화, 비상벨, 교직원의 도움 등으로 분리 요청 (연락 받는 곳을 단일화 또는 순서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 가용할 수 있는 교직원 활용 - 분리 상황 판단 후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로 분리, 별표의 학습지원 -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 - 학생 분리는 오남용되어서는 안됨. - 학생 분리의 장소, 방법, 절차 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설정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 18 -

예제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 배), 등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도색잡지, 오토 바이, 자량 등		※ 학부모가 변형발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 이 지난나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 리

○ 물품 분리 보관의 주의 횟수 학교 조정 가능 1~2회차 주의 실시, 3회차: 물품 분리 보관, 2~4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은 사유를 알리고 즉시 분리 가능
○ 분리 시간: 수업 종료 후 또는 방과 후 등 조정 가능
○ 기간 조정 가능: 1~5일 또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물품분리장소: 학교 지정 장소(학년 교무실)
○ 물품보관 담당자: 학교 지정한 담당자(학급 담임교사 등)
○ 물품보관일자: '학생생활지도' 관리대장으로 일원화

순	학교 내 소지 금지 물품	순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은 예외)
3	블루투스 이어폰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보팅카스, 본드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도박 물품(화두, 카드 등)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미약행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6	...
7	도청기, 소형카메라	7	...
8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8	...
9		9	
10	학교에서 정한	10	학교에서 정한

⑯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⑰ 학급 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제 44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칙 예시] 별표3

요건	분리 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 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 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 이저빔 기기 등	1일~5일	교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즉시 분리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 림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 게 되돌려줌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			

- 19 -

- 20 -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훠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45 조 【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46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7 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8 조 【기타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

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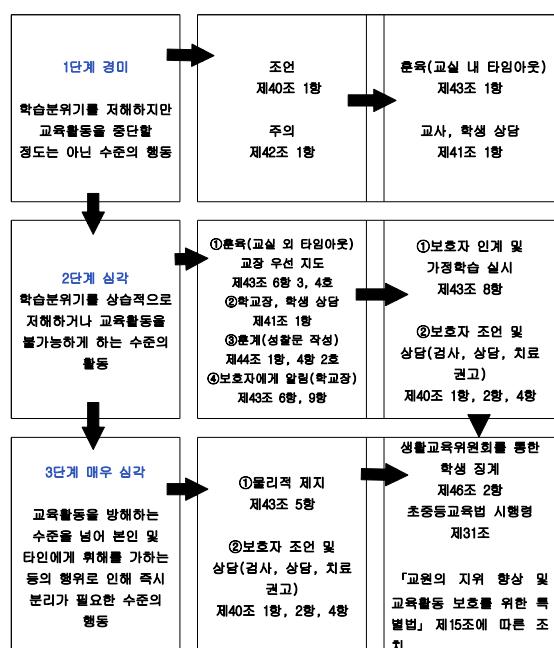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3.12. 14.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칙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칙이 상충 될 때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제1장(총칙), 제2장(생활지도의 범위), 제3장(생활지도의 방식)이 우선한다.

부록1. <문제 학생 지도 방법 >



부록2 제6조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관련 서식(별도 문서)